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7.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7호로 2019년 7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 긴급복지와 관련된 위기사유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긴급복지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기사유 확대에 따른 각 호 변경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1) 당초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19. 5. 16. ~ 6. 5.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개정 2018.12.11., 시행 2019.6.12.)으로 조례위임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인용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법 제2조제8호로 변경하였음
- 본 조례안은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 5. 28.]